

제680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전 명 : 효창공원 화장실 기단 정비 등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
- 심 사 일 : 2013. 7. 1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4,100,000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5일
 - 사업규모 : 효창공원내 화장실(지상1층, 연면적 39.78㎡) 주변 침하로 보도판석 정비
- 심사결과 : 부적정(자체설계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설계 도면이 불필요한 건축물 주변의 단순 개보수 공사로써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발주부서에서 자체 설계할 것. 알림 : 주요공종이 자체설계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: 4,100,000원(용역비 전액 감액)
3. 조건부여 이행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 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, 심의절차 이행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주부서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 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장실 주변 매립토사 침하로 외부바닥 판석 및 외벽 치장 벽돌 들뜸 현상발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탈락 재료를 해체(양호한 재료는 재활용)하고 지반침하 부위에 토사충진 및 다짐 실시 후 - 외부 바닥재 재설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건축물 외벽 및 주변 시설물 등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해당하므로 자체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 ○ 자체설계 시 별도의 도면 작성 등에 추가경비가 필요할 경우 「기술용역 자체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비용 지원계획」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비용 반영여부 자체검토 시행 ※ 「2013년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용 지원계획 알림」 【기술심사담당관-1099(2013.01.22)】참조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주요인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없음